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리걸테크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0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취지	4
2. 리걸테크의 의의	4
3. 리걸테크의 유형	5
4.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	8
5.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0
6. 제정안의 체계	12
7. 조문별 검토	14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14
나. 국가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안 제4조)	22
다. 리걸테크산업 육성 정책(안 제5조~제9조)	24
라. 허가결격사유·허가의 취소·피해보상보험 계약(안 제10조~안 제13조)	28
마.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안 제14조~안 제15조)	31
바. 감독·시정조치·영업의 정지 등·청문(안 제16조~안 제19조)	34
사. 벌칙(안 제20조~제22조)	37
아. 부칙	3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18.
3. 회부연월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법률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걸테크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폭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무가 가지는 전문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걸테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등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리걸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 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리걸테크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3조).
- 사. 법률분야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아.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서비스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 제정안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산업을 진흥하고, 리걸테크 서비스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리걸테크의 의의

-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을 의미하는 Legal과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줄임말로,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의미함.
- 리걸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의 법률서비스 버전으로 이해되는데,¹⁾ 통상 인터넷의 보편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의 IT 기술발전을 법률시장에 활용하는 형태를 널리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 오피스테크와 리걸테크를 구별하여, 법률사무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오피스테크를 제외한, 변호사에 의

1) 사사키 타가마사, 안진우 외 공역, 「법률비즈니스의 미래를 바꾸는 신기술 리걸테크」, 법률신문사, 2018, 30면.

한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좁은 의미의 리걸테크로 정의하는 견해도 존재함.²⁾ 그러나 오피스테크와 리걸테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률 사무에 활용되는 모든 형태의 기술을 집합적인 의미에서 넓게 리걸테크라 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³⁾

3. 리걸테크의 유형⁴⁾

<법정보 검색>

- 리걸테크의 기본적 형태임.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후 들이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법률 검색에 투입하며, 로펌은 검색 비용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함. 법령, 판례, 문헌, 양형기준, 입법동향 등 법정보 검색은 법률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업무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업무이고, 정보의 양과 질의 법률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임.

<변호사 검색>

- 법률산업은 전문가 시장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됨. 특히 국내에서는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 변호사 경력, 사건 수임 비용 등에 대한 변호사 정보 접근성, 변호사 선택권 등이 제한적임. 또한 현행법상 변호인은 중

2) Hartung, Bues, Halbleib, Legal Tech, C.H.Beck, 2018, p.6.

3) Frank Remmert, Legal Tech-Strategien Für Rechtsanwälte, C.H.Beck, 2020, S. 5.

4) 김혜진, 「신기술 규제와 일반원칙과 리걸테크」, 한국법제연구원, 2023. 8., 17면.

개인을 통한 수입이 불가하고, 키워드 광고나 배너 광고만 가능해
고객과 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채널이 한정적인 상황임.

<전자증거개시 및 디지털 포렌식>

- 미국 기록물관리협회에 따르면, 기록물의 90% 이상이 전자문서로, 소송과 관련된 증거 및 검토해야 할 문서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함.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e-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 기업들이 등장, 리걸테크 시대를 열었음.
-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총칭하는데,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거 데이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며, 신뢰성 있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 의해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리걸테크의 분야로 각광받게 됨.

<법률 자문>

- 법률자문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서면 작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법률서면 자동작성 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됨. 두낫페이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임.
- 법률 서비스의 핵심은 승소 또는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개발이고, 의뢰인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 법령, 판례 추이, 사건을

맡는 판검사의 성향, 수임사건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및 승소 전략을 수립해야 함. 법률산업 내부와 외부의 복잡성이 빠르게 심화되면서 법조인 개인 또는 단체가 과거 경험에 기반해 전략을 수립하거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거나 전략을 수립하는 고도화된 서비스가 개발됨.

<디지털 재판>

- 디지털 재판은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엄청난 기회이지만 기술을 빠르게 이해하고 구현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재판 분야의 디지털 변환은 나머지 사회의 그것보다 상당히 뒤쳐져 있음. 불충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예산 문제, 전통을 고수하는 사고 방식, 이해 관계자의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으로 지목됨.

4.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⁵⁾

- 독일은 리걸테크 산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예를 들어 리걸테크 회사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사이트⁶⁾에서는 190개 이상의 리걸테크 회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안내하고 있음. 독일의 55개 도시에 있는 리걸테크 회사를 지도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은 12개 범주별로도 검색할 수 있음.

변호사 업무지원 변호사 업무지원 도구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변호사 디렉토리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유료 DB 	자동화된 법률 자문 자주 발생하고 반복되는 중요 법률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교육 및 연구 연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문서 분석 eDiscovery 및 AI를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분석 도구 제공 	문서 작성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개별화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앱 제공 	전문가 포털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람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서비스 	법률 앱 중요 법률에 대해 검색 가능하고, 구조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무료 앱 서비스 
법률 데이터베이스 판결, 법률 및 주석 등이 포함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 	법률 프로세스 아웃소싱 주로 B2B 부문에서 활동하며, 법률부서 및 법률회사에 외부 전문지식 등 아웃소싱 정보 제공 	뉴스 포털 뉴스 포털 및 콘텐츠 제공자가 법조계의 뉴스와 흥미로운 사안 등을 법조인에게 제공 	법률 취업시장 공석이 있는 법률회사 및 부서에서 유료로 구인광고 게재(최근 애플리케이션은 매칭 알고리즘과 앱 제공) 

- 2007년 12월 제정된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RDG, 이하 「법률서비스법」은 무자격 법률서비스로부터 법률서비스 수요자, 법률행위 및 법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함. 동법은 독일에서 재판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

5) 박진애,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3. 4. 4.

6) <https://www.legal-tech-in-deutschland.de/>

하는 법률임.

- 이 법에서 허용하는 법률서비스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률서비스 등록부’에 등록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한 “등록 법률서비스”와 별도의 등록요건 없이 서비스가 가능한 “미등록 법률서비스”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주요 내용
등록 법률서비스	• 채권추심서비스 - 민법, 상법, 증권법, 회사법, 강제집행도산법, 민사소송법, 비용법 지식에 기반한 법률서비스
	• 연금상담 - 법정연금재해보험법, 사회보장의 구조, 편제 및 구성원칙에 관한 지식, 사회법 행정절차, 사회법원 절차, 모든 사회급부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적 원칙에 관한 지식에 기반한 법률서비스
	• 외국법 법률서비스 - 해당 외국법 전문지식에 기반한 법률서비스
미등록 법률서비스	• 무료 법률서비스
	• 다음과 같은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 직능 및 이익대표단체, 협동조합(서비스 대상: 정관상 업무영역 범위 내 회원) - 공공기관과 공인기관 - 「도산법」에서 규정하는 파산절차 조전자, 「사회법전」에서 규정하는 민간복지단체, 공인 민간청소년지원기관, 장애인이익증진공인협회 - 소비자센터 및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그 밖의 소비자협회

5.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2024. 9. 기준으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아래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법제처와 산하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를 두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의견을 기재함.

○ 법제처는 현재,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하여 법령 원천데이터 DB를 구축/개방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법령정보 활용을 위해 오픈API 제공, 법령정보 간의 연결관계를 정의한 지식베이스 구축·개방, 법령 데이터의 의미를 규정한 메타데이터 제공 등 관련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21년 12월부터 리걸테크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등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리걸테크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20.12.10. 시행)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① 생략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제정안의 리걸테크 사업자 지원과 관련한 조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중 일부)은 현행 법령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처 소관 사항으로서 이미 법령정보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법률안에서 규율하려는 사항은 법령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법령정보법과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⁷⁾⁸⁾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리걸테크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정안은 국내 리걸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나, 허가제 도입 등 일부 조항은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⁹⁾

7) 법제처 의견회신(2024. 9.)

8) 조문별 검토의견은 아래 조문별 검토에 다시 기재함.

9)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견회신(2024. 7.)

6. 제정안의 체계

장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산업을 진흥하고, 리걸테크서비스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제2조	정의	· “리걸테크” - 인공지능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법률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기술
	제3조	국가의 책무	·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2장 리걸 테크 산업 육성 등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5년마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제6조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정부는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걸테크 관련 시설,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제7조	기술개발 등	· 정부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
	제8조	자금의 지원	·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제9조	업무의 위탁	· 법인·단체 또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 위탁
제3장 리걸 테크 서비스의 제공 등	제10조	허가	· 법무부장관의 허가
	제11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허가 결격사유
	제12조	허가의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허가 취소 사유
	제13조	피해보상보험 계약	·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 의무
	제14조	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리걸테크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
	제15조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 법률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장	조문		주 요 내 용
제4장 감독 및 시정 조치	제16조	감독	· 이 법의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
	제17조	시정조치	· 미변경신고 등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
	제18조	영업의 정지 등	· 미허가 등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제19조	청문	· 허가 취소 등에 대해 청문
제5장 벌칙	제20조	벌칙	· 미허가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	양벌규정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제22조	과태료	· 미변경신고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산업을 진흥하고, 리걸테크서비스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걸테크”란 인공지능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법률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2. “리걸테크서비스”란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법률 분야의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학력, 경력, 업무실적 등 법률분야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
 - 나. 자동화된 법률 자문
 - 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
 - 라. 자동화된 법률 문서 작성수단의 제공
 - 마. 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 바.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법률자료의 제공
3. “리걸테크산업”이란 리걸테크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란 리걸테크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법률분야종사자”란 법률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세무사, 채권추심업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안 제1조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산업을 진흥하고, 리걸테크 서비스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1. 11. 17. 에 열린 새말모임¹⁰⁾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 및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리걸테크’의 대체어로 ‘법률 정보 기술,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를 선정 한 바 있음.¹¹⁾

-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리걸테크’(제1호), ‘리걸테크서비스’(제2호), ‘리걸테크산업’(제3호),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제4호), ‘법률분야종사자’(제5호) 등을 규정함.
- 먼저, 제1호는 ‘리걸테크’를 인공지능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법률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률분야’나 ‘법률적 수요’는 그 대상,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 최소한이라도 규정한 사항이 없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은 있음.
- 다음, 제2호는 ‘리걸테크서비스’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향후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 영역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서비스의 범위를 법률에 열거하기 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혹은 결합하여 가공된 서비스(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비스를 분석·가공하여 생산된 정보)등으로 규정

10)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1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1. 12. 1. 배포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래에서는 각 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봄.

-먼저, 가목은 ‘학력, 경력, 업무실적 등 법률분야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가 법률분야종사자의 단순한 인적사항에 그치는 것인지, 혹은 친분관계나 판결 성향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만약 포함된다고 한다면 해당 정보를 사건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이른바 ‘프로파일링’은 법률 분야에서 법관이나 변호사의 판결 패턴, 경력, 성향 등을 분석·예측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관에게 프로파일링 기술은 외부에서 그들의 판단을 예측하고, 나아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바,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협할 수 있고,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나아가 프로파일링의 알고리즘은 종종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며 이는 잘못된 예측과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법률 시스템에 도입되면,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잘못된 예측이 법관이나 변호사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 등도 제기되고 있음.¹²⁾¹³⁾

-둘째, 나목의 ‘법률 자문’과 라목의 ‘법률 문서’의 경우에는 해석에 따라서는 규율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전문자격사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변호사를 포함한 타 전문 직역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다목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의 경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률 예측은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AI 예측 모델의 경우 복잡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 같은 알고리즘의 불투명성¹⁴⁾으로 인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고,

12)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2024. 8. 22.), 김신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부장판사), 자료집 p.35. 참조

13) 아울러 영미법에서 사실인정은 배심원의 영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 법관의 주된 업무가 사실인정의 영역으로, 사실인정에 관한 법관 프로파일링은 영미법계 국가의 법관에 대한 프로파일링보다 훨씬 위험성이 클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됨.

14) 일명 AI의 블랙박스(Black box)적 속성으로, 해당 알고리즘 또는 서비스에 특정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대응되는 출력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각 데이터의 입력에 따른 특정 출력이 도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AI의 속성을 의미함.

양종모, “재범의 위험성 예측 알고리즘과 설명가능성 및 공정성의 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0호, 2021, 207-240면, 218면.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AI 모델의 특성상 학습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을 경우 모델의 결과도 편향될 수 밖에 없어 공정하지 않은 판결 예측을 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 등도 제기되고 있음.¹⁵⁾

또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은 달리 말하면 판결 예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AI가 재판 예측과 자문 활동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에 있어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판결 예측 서비스 설계 및 개발 시 데이터와 관련하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¹⁶⁾¹⁷⁾상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다음, 제4호의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① 변호사인 리걸테크 창업자의 외부 경영 전문가 선임, 다른 기업과의 기술 협력, 투자자에 대한 중간배당 등이 「변호사법」 제34조에 저촉되는지, ②

15)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2024. 8. 22.), 김신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부장판사), 자료집 p.36. 참조

16)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7)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적절하게 가명처리되어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 목적의 통계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9., 5-10면.

애플리케이션 내 변호사 추천 광고가 「변호사법」 제34조에 저촉되는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변호사법」 제34조제5항¹⁸⁾은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금지 조항으로써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¹⁹⁾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벌칙 조항인 제109조제1호²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정한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18)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19) 판례는 “현대사회에서의 복잡다기하고 전문화된 법률관계 등을 변호사만이 독점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변호사로서도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법률 이외 다른 직역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지식을 제공받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와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해당 소송사건 등의 수임과 변호사 선임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법률사무에 관여한 정도,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과 그 비율, 변호사와 관계, 소송 등의 사무에 관한 비용 부담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그 지배에 두어 고용하거나 변호사와 실질적으로 동업하는 것과 같아 변호사의 독점적인 법률사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대가 지급 약정은 금지되는 보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나1142 판결.)

20)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변호사법」 제34조와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을 배제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와 법률 수범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바, 이러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됨.

특히 ‘로톡’등 이른바 변호사 광고 업체들은 변호사에게 변호사 노출 광고비를 부과하는데, 이 행위가 「변호사법」 제34조제1항제1호²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그간 논란이 있어 왔고,²²⁾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7,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중임.

- 마지막으로, 제5호는 ‘법률분야종사자’를 정의함에 있어 전문 자격증을 갖춘 여러 직역들을 나열하면서 ‘채권추심업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채권추심업체’가 ‘법률분야 종사자’로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한 업체들도 모두 포함

21)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2) 「변호사법」 제34조제1항에 저촉되는 대가성이 있는지가 문제됨. 비슷한 광고 수익 구조를 가진 로톡의 노출 광고비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가 없어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거래에 개입해 대가를 얻지 않으므로 대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측과, 광고비가 사실상의 수수료의 변형 형태이므로 대가성에 해당한다는 측이 대립하고 있음.

김대은, “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 로톡에 칼을 빼들었다”, 동아일보, 2021. 5. 24.자 기사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국가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안 제4조)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리걸테크 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리걸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자격 및 제공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3조는 국가로 하여금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간, 리걸테크 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제3조는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주 수요자인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안은 안 제13조²³⁾ 및 제15조제2항²⁴⁾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에 있어서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²⁵⁾

23) 안 제13조(피해보상보험 계약)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리걸테크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은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안 제15조(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에 대하여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분야종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5) 이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5조 등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는 리걸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자격 및 제공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

이는 제정안이 리걸테크 산업과 관련하여 기본법·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법제처는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령정보의 제공 및 기술지원 등 일부 규정의 경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중이고, 법제처를 이미 법령정보의 관리/제공의 소관 부처로 예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충돌 소지, 그리고 변호사, 세무사 등 각종 직역 관련 개별법상의 규정과의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임.

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다. 리걸테크산업 육성 정책(안 제5조~제8조)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리걸테크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리걸테크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리걸테크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리걸테크 관련 시설,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2.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확보 및 공개·가공·유통
3. 리걸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연수
4.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5. 리걸테크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
6. 그 밖에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법령·판례 등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2. 제7조제1항의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

3.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로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리걸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법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 구성에 관한 업무

2. 제7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3.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로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 안 제5조는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리걸테크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정보법 제4조에 따라 법령정보 수집,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현재 제정안 제6조 및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제처 역할을 고려하여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²⁶⁾²⁷⁾

- 안 제6조는 정부가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법령·판례 등 리걸테크

26) 법제처 의견회신(2024. 9.)

27) (법제처 수정의견)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법제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함.

제6조에 규정된 ‘판례’의 경우, 사법부에서 생산한 자료로서 정부가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제처는 ‘법령’의 경우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의 하나로서 법령/판례 등 각종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개방하기 위하여 「법령정보법」 제8조제1항²⁸⁾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²⁹⁾에 따라 법령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방법(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등 현행 법령정보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안에서도 법령정보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³⁰⁾³¹⁾

○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28)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29)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6조(법령정보의 관리·제공)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30) 법제처 의견회신(2024. 9.)

31) 정보체계를 운영하도록 기속 규정을 두기보다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정보체계를 운영 가능한 점을 고려해 재량 규정의 문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제처 수정의견) ② 법제처는 법령·판례 등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의 마련, 자금의 지원 및 업무의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함.

법제처는 안 제7조와 관련하여 법령정보법 제9조제2항³²⁾에서 ‘법제처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원천 법령데이터 API 제공, 법령정보간의 연결관계를 정의한 지식베이스 지원 및 메타데이터(법령정보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 제공 등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안 제9조에 대해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현재 법령정보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법령정보법 제12조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등 현행 법령정보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안에서도 법령정보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³³⁾³⁴⁾

3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3) 법제처 의견회신(2024. 9.)

34) (법제처 수정의견) 제9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법무부장관 또는 법제처장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라. 허가·결격사유·허가의 취소·피해보상보험 계약(안 제10조~안 제13조)

제10조(허가)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변호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
3. 그 밖에 리걸테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조(피해보상보험 계약)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리걸테크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은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0조 및 제13조는 ‘리걸테크서비스’ 중 자동화된 법률 자문(안 제2조제2호나목) 및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 서비스(안 제2조제2호다목)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안 제10조), 리걸테크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함.

- 안 제10조의 허가 및 안 제13조의 피해보상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안 제2조제2호의 나목 및 다목에 한하여만 허가제 및 피해보상보험 계약 가입 의무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외의 가목(학력, 경력, 업무실적 등 법률분야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 라목(자동화된 법률 문서 작성수단의 제공), 마목(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바목(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법률자료의 제공)를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특히 가목이나 마목의 경우에는 법률분야종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판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허가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될 수 있지만, 특정 서비스에 한하여만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법에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도 보험사에 해당 상품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논의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안 제11조제2항은 허가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임원만 변경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해소되는 것으로서 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논의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안 제14조~안 제15조)

제14조(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① 법률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하 “일반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제2조제2호 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및 바목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는 일반인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유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에 대하여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분야종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안 제14조는 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리걸테크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는 법률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리걸테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로서 일반인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유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제1항), 일반인에 대하여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분야종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제2항).

- 먼저, 안 제14조는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해석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안 제20조제1항제3호³⁵⁾는 범위를 넘어서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안 제14조의 범위는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수범자로 하여금 해석 여부와 무관하게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 안 제15조제1항은 리걸테크사업자로 하여금 일반인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유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2조제2호다목(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은 제외하고 있는데, ‘다목’만 제외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앞서 검토한 안 제14조와 마찬가지로 안 제15조에서의 ‘범위’ 또한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수범자로 하여금 해석의 논란이 없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범위’는 그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5) 안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한 자

아울러 안 제15조제2항은 일반인에 대하여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을 할 때 반드시 법률 분야종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고지만으로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임.

일반적으로 유상 계약의 경우에는 단순 고지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별도의 약관을 작성하여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지와 사업자의 책임간의 관계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³⁶⁾의 해석·적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바. 감독·시정조치·영업의 정지 등·청문(안 제16조~안 제19조)

제16조(감독)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정조치)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서 정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그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영업의 정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营业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청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허가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

- 안 제16조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법의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안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6조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무부장관의 명령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해석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안 제16조의 명령 ‘범위’는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서, 수범자로 하여금 해석의 논란이 없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17조는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 제13조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그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① 안 제17조에 규정된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직무상 의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일컫는지 명확하지 않고, ② 사업자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태료 처분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8조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미허가, 시정조치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안 제18조의 영업의 정지 등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营业을 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영업의 정지 등은 미허가나 시정조치 미이행, 영업정지 명령 불이행 등 중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단순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 여부와 위반을 조장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법문의 자구에 있어 안 제18조제1항제4호는 해당 조문이 제1항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사업자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 등의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사. 벌칙(안 제20조~제22조)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안 제20조부터 제22조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개별 범죄의 보호법익과 행위태양(行爲態樣)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³⁷⁾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37) 헌법재판소 1999. 5. 27. 96헌바16 결정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있다고 보임.³⁸⁾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22조제1항제3호는 안 제18조의 영업의 정지 등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营业을 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영업의 정지 등은 미허가나 시정 조치 미이행, 영업정지 명령 불이행 등 중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단순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 여부와 위반을 조장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22조제2항은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절차’의 마련 여부는 수범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법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중 략)…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 아니 된다.

38) 법원행정처도 같은 취지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2024. 8.).

아.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일반적으로 공포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은 공포 후 시행까지 국민이나 시행기관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려는 경우에 사용함.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060